社 說

모두의 의견 반영된 제도 정착

——특별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을 기대하며

총장선거의 큰 전환점을 가져오리라 기대했던 교수협의회 총회가 지난주 3일에 있었다.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구성원들의 이목도 집중됐던게 사실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장 선출방식의 토대를 마련할 '특별위원회'만 구성한다는 선에서 마무리 됐다. 결국 '뜨거운 감자'는 특별위원회에넘겨진셈이다.

비록 이날 회의에서는 총학생회가 주장하는 교수·학생·노조가 참여하는 3자협의체의 구성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특별위원회에서 대학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공청회를 의무화하는 등 공정적인 결과를 마련하였다. 또한 총장선출 방식의 상정안건을 복수조항으로 의무화하고 있어 교수들이 선택할 폭을 넓혔을 뿐 아니라, 어느 한쪽만의 의견표출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어 총장선출 문제를 어느정도 교수협의회에 맡겨보자는 학내 여론을 형성하는데도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가지 난제는 남아있다. 대체로 진보성향의 학생들의 의견과 보수성향의 재단측 관계자들의 기대를 어떻게 수렴해 내느냐의 문제다. 이는 80년대 학원자율화 이후 사학재단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 학생과 재단이 큰 차이를 보여왔기 때문에 단기간내에 그리고 몇번의 공청회만으로 그들이 만족하는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대학의 현 문제점중의 하나는 조영식총장 사퇴 이후 대학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구심점의 부재라 할 수 있다. 우리대학의 경우 대학의 설립자가 총장으로 현존한 상태로 있어왔다. 이러한 특수성은 여러가지 대학발전에 있어 많은 긍정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학원 구성원들의 행동사고를 능동적이기 보다는 때때로 수동적으로 만드는 부정적요소도 내포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 요인은 조영식총장 사퇴 이후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많은 대학 구성원들이 행정의 공백을 우려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난제들 속에서 총장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하는 안건이 학생들이 주장하는 '직선제'가 되든 명분보다는 진단이기주의와 대학구성원들간의 분열을 막는 '간선제'가 되든 결국 어느정도의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다. 즉 구성원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총장선출이 대학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돼야 한다는 것이지 구성원 상호간의 불신만을 확인하는 자리가 돼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이 가장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위원회의 구성은 지체됨이 없이 신속하게 구성돼야 하겠으며, 활동 역시 구애됨이 없이 자유롭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겠다. 이를 바탕으로 모두의 의견이 반영되어 우리대학에 가장 알맞는, 우리대학만의 제도가 뿌리내리길 바란다.

정부, 다각적 통일노력 보장해야

——'학생의날 기념행사' 불허방침을 보며

11월을 새롭게 시작한 지난주는 김영상 정부의 통일정책이 지난 시기 군사독재시절과 별반 다를게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케 하였다.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저지와 조국의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경기인천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 20만 학생들이 스스로 준비한 '제 64주년 학생의 날 기념 남북 청년학생 자전거 달리기 대회및 통일염원 결의마당'이 행사 바로 전날인 2일 저녁에 불허되었다.

불허이유는 지난 6월 12일 한총련 차원의 집회에서 과격시위를 벌여 불법폭력시위전력이 있고 10월 28일에서 11월 3일간이 반미투쟁주간이어서 과거 전력으로 볼때 집단적인 폭행등 공공의 안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폭력행위 발생이 우려된다는 점이었다.

정인총련의 경우 행사준비때부터 통일원측과 사전협의를 거쳐 조건도 구하면서 합법적으로 자진거 달리기 대회를 준비하였고 정부측에서 허가도 난 상태였음에도 행사를 거의 다 준비한 하루전날인 지난 2일 저녁 갑작스레 불허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한편 서울지역총학생연합에서도 학생의 날을 기념하여 서울, 광양 대학생 축구대회를 통일원과 사전협의하에 진행하였으나 '이북의 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어떠한 민간교류도 불허한다'는 답변만 받게 되었다.

올들어 한총련을 비롯한 대중단체에서는 통일을 위한 순수민간교류를 정부측과의 사전 협조하에 추진해왔다. 그것은 지난 2월 '어떠한 것보다도 민족의 이익에 우선할 수 없고 어떤 동맹국도 민족의 이익에 우선 할 수 없다'는 김영삼대통령의 취임사가 국민들에게 정부당국의 통일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지난 군사독재시절엔 남북합의서를 채택하였음에도 대북 창구단일화 정책을 펴왔다. 그러한 군사시절에나 있을 법한 창구단일화 논리가 민족의 이익을 우선시 할 것을 천명한 문민정부하에서도 계속된다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당국의 통일의지를 의심케 하는것에 다름아니다.

우리는 군사독재 시절이었지만 91년도 12월 남과 북 고위급회담을 통하여 채택한 남북합의서를 가지고 있다. 만약 이북 핵이 있다면 그 합의서에 있는데로 남북핵조절 통제위원회를 다시 재개하여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정착이 될수있도록 비핵지대화를 계속 추진하면 될것이고 상호동시핵사찰을 실시하여 한번도 땅의 핵 문제에 대해 남북당국이 자주적으로 풀어가야만 할 것이다.

김영삼정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이북의 핵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통일외교정책에 있어 특히 미국과 일본의 외존에서 벗어나 민족자주의 입장을 견지하고 국민들의 다각적인 통일노력을 지지, 지원하길 바란다.

정치적 통일 현실화한 법통합

강연초록 —동서독 통일과 법질서 통합 모형

본교 사회과학연구소는 (소장 신정현 교수) 지난 3일 특별 초청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이에 본고는 초청강사 허영 연세대교수의 강연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으로 한반도 통일과정 논의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편집자 註)

Ⅰ. 동서독의 흡수통일

동서독의 통일은 바로 직전까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하나의 사건이었다. 이 같은 통일이 진행되는 내면을 바라보면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얽혀있음을 알 수 있다. 40여년 동안 체제와 이데올로기를 달리 해온 두 국가가 하나로 통일된다는 것은 말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적 측면의 과정은 하나의 결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반면에 이를 현실적으로 규정하는 서로 다른 법질서의 통합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진지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었다.

동서독 통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원인과 계기는 아주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다. 이렇듯 동서독의 통일이라는 것은 동서독 내부의 상황이나 당시 국제정세의 흐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지만, 직접적인 계기는 1989년 11월 9일에 이뤄진 동독정권의 문호개방이라 할 수 있다. 즉 우리가 "장벽이 무너지던 날"이라 부르는 그날을 기점으로 독일통일의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것이다.

당시 동독정권은 이미 체제자체의 유지가 힘들다는 현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두가지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체제유지를 연장시켜 보고자 했었다. 첫째, 사회주의 이념의 포기를 주 내용으로 하는 동독헌법의 개정작업이다. 둘째, 자유로운 선거를 보장할 수 있는 선거법의 개정이다.

이 과정에서 한스 모드로프 동독 수상이 점진적인 통일을 위해 '조약공동체'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서독의 정치지도자들도 호의적인 반응과 이를수용한 정책을 채택 하였다.

그러나 사태의 진전은 1990년 5월에 예정되었던 동독의 총선거가 3월로 앞당겨 실시됨으로써 급변하게 되었다. 3월 동독총선의 결과는 동독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였다.

즉 동독의 기민당이 제1당으로 등장하였으며, 5개 정당과 연합하여 연립정부를 구성하였다. 동독 기민당의 대표로서 새로 동독 수상에 취임한 로타르 미지에르는 총선에 나타난 민의를 반영하는 통일정책을 채택하였다. 즉 서독 기본법 23조에 의해 서독에 가입하기로 한 방안은 이후 인민의회의 인준을 거쳐 '흡수통일론'을 가정사실화하였다. 한편 서독내에서도 동독의 '흡수통일론'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분위기가 흘렀다.

Ⅱ. 법질서 통합의 진행과정

정치적 통합으로 시작된 동서독의 통일이 현실적으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법질서의 통합이 매우 중요한 과정이었다. 동서독의 법질서 통합과정은 3단계에 걸쳐 진행되었다.

1. '통합조약'

'통합조약'은 1990년 5월에 체결되었으며, 이는 '동독헌법개정 및 보충에 관한 법률'과 함께 진행되었다. 자유민주주의, 연방국가 구조 및 사회국가 원리라는 3원칙을 중심으로한 이같은 조치는 동독 주권의 일부를 서독에 넘겨줄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2. '선거조약'

1990년 8월 초에 서독 연방선거법을 보완으로 해서 통일된 연방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조약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마련된 '선거조약'의 일부 내용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위헌소송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연방 헌법재판소는 이같은 위헌 주장을 받아들여 통일독일에서 실시하는 최초의 선거에서는 동서독의 표를 분리하여 계산하도록 결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1990년 12월 2일에 통일 독일의 연방의회 총선거가 실시되었던 것이다.

3. '통일조약'

법질서를 통한 동서독 통일의 진행과정은 1990년 8월 말에 체결된 '통일조약'에 의해 일단락되었다. '통일조약'은 서독 기본법을 기본으로 6개 조문을 개정하여 완성되었다.

그러나 '통일조약' 역시 부분적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먼저 '통일조약'을 마련하기 위한 서독 기본법의 개정은 '통합조약'을 근거로 이뤄졌는데 외국과의 조약을 근거로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이는 입법부 의원들의 고유의 권한인 헌법 개정안 발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서독 기본법 79조의 헌법 개정절차를 무시한 위헌적인 조치라는 것이다.

이같은 위헌소송에 대해 연방 헌법재판소는 서독 기본법을 제정한 이들이 헌법 전체에 "통일지향적 정책 수행 명령"의 정신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조치는 이에 일치한다는 근거를 들어 합헌 결정을 하였다. 그 결과 1990년 10월 3일에 '통일조약'이 마련되게 되었다. 그리고 이 법률의 효력이 동독 지역에 적용되는데는 1992년 말까지의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연방 참사원 준비는 1995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설정하였다.

Ⅲ. '통일조약' 시행에 있어서 문제점

'통일조약'에 의한 기본권 조항을 점진적으로 실시하는 가운데 몇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였다. 이는 서로 다른 체제를 유지해 온 두 국가가 통일되는데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상정할 수 있는 경험적인 교훈으로 남북한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1. 제도개혁과 인사개혁

동서독의 통일과정의 현실적인 실행과정에서 가장 먼저 부딪힌 문제가 바로 사법제도와 행정조직의 개편이다. 이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은 2년동안의 자격심사 기간을 거쳐 적격판정을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공무원에 재임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과거 동독의 비밀경찰과 관련된 경력의 소지자는 기간에 상관하지 않고 파면한다는 단서를 포함하고 있다.

과거 동독의 경우는 일반적인 공산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높은 비율의 공직자를 두고 있었다. 즉 1990년 8월 기준으로 서독의 공직자가 7%인데 반해 동독의 경우는 12%에 달하는 2백10만명이나 되었다. 그리고 동독 공직자들의 대부분은 중앙행정기구에 소속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제도와 인사 개혁이 진행되었는데, 사법부의 경우에는 법관과 검사를 포함하여 53.1%인 3백43명이 적격판정을 받아 재임용되었다. 한편 재임용에서 제외된 나머지는 새로운 직업을 신택할 수 있도록 직업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 재산권

독일의 현대사에서 재산권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은 3차례가 있었다. 첫째, 1935년부터 45년까지의 2차대전 기간중에 나치정권에 의한 불법적인 재산권 침해이다. 둘째, 1945년부터 49년 사이의 소련점령군에 의한 재산권 침해이다. 세째, 1949년 이후 동독정권에 의한 재산권 침해이다.

통일독일의 정부는 이같은 일련의 재산권 침해를 보상하기 위해 두번째 경우인 소련군 점령 당시의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불문에 부치고, 나치정권과 동독정권에 의한 침해의 경우에만 '현물반환원칙'을 통해 보상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를 위해 3백여명의 변호사를 포함한 4천여명의 인원을 고용한 '신탁공사'를 설립하여 보상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동독 경제의 98%를 차지하고 있던 8천개의 기업체, 4만개의 사업체, 6백만평의 종업원들의 사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Ⅳ. 동서독 법질서 통합의 교훈

동서독 통일과정을 지켜볼 때 당시의 국제정치 환경이 유리하게 작용한 행운도 없지는 않았지만, 게르만 민족의 독유의 침착성, 완벽주의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슬기와 같은 예지가 이같은 역사적인 일을 가능하게 하지 않았을까? 즉 우리가 '흡수통일'이라고 간단히 인식하는 사건도 흡수당하는 쪽이 사전에 법개정을 통한 준비를 한 노력이나 흡수하는 쪽에서도 유연한 법개정 과정을 통해 이를 수용하는 노력들이야말로 현실적으로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은 독일통일의 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통일방안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삼가해야 한다. 어떠한 통일방안도 통일시에는 하나의 협상안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복합리한 법질서를 정비하고, 북한의 법질서 및 생활 실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조치와 노력이 오히려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둘째, 통일논의를 정치적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통일의 과정을 추진할 수 있는 법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에도 '통일조약'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주요 역할은 법학자들이 담당했었다. 따라서 한국의 통일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도 법학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세째, 남북한이 독일의 흡수통일이 아닌 평등통일을 이룬다고 할 때 상호대립적인 이데올로기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보색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북한의 모든 정보에 대한 개방이 필요하고, 자유주의 헌법과 사회주의 헌법의 조화를 통한 법질서 통합을 준비하는 노력이 요청된다.

이 동 선
<본교 강사·정치학>

흡수 통일안 수용으로 독일통일 급진전 계기

한반도, 통일 실현위해 소모성 논쟁 배제해야

(고) (황) (만) (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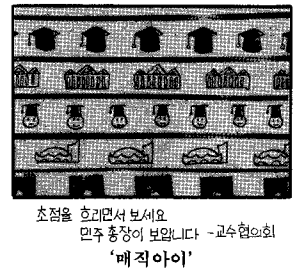

초점을 흐리면서 보세요
민주 총장이 보입니다 -교수협의회
'매직아이'

기술의 現代
세계의 現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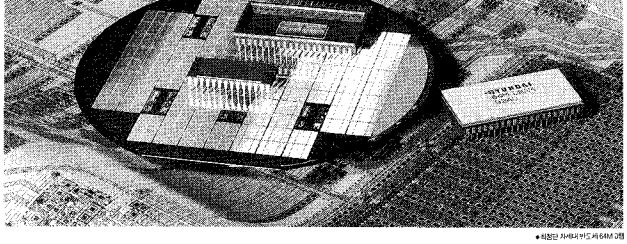

●최첨단 자세트 어드 피6M 2개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었습니다
뜻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이제,現代는 변화하는 시대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절감하며
'기술의 現代, 세계의 現代'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첨단기술 개발과 수출 증대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과감한 경영 쇄신을 이루어가겠습니다.

意識 改革
시대는 새롭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가짐도 확실하게 달라져야 합니다.
現代는 3가지 기대 현실을 타파하는데 앞장서며, 중역의 주기적인 현장 ·무로 공동체 의식과 상호 신뢰의 풍토를 조성하고 근검절약의 가업 부화뇌동 정립에 나가겠습니다.

尖端技術 開發
첨단기술 개발로 부가가치 높은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경쟁을 제고시켜야 합니다.
現代는 자동차, 선박, 반도체 등에서 무공해자동차, LNG선, 64MD램 반도체의 개발성과를 올리며 지금도 17개사, 28개 연구소의 5천여 연구진이 분유 발하고 있습니다.

精誠과 品質
세계를 누빌 초일류제품 그것은 바로 우리 사업과 최선을 다하는 정성에서 비롯됩니다.
현재의 기술로도 경쟁만 들인다면 수출을 2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現代는 품질을 중시고 우수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부는 하나를 조이는데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輸出 增大
자국보호 우선의 세계만 경제 전쟁시대 — 現代는 수출을 통해 경제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신선한 사상에서 당당히 경쟁하고 있습니다.
기간산업에서 미래 첨단산업까지, 18만 現代人이 하나로 뭉쳐 수출경쟁력을 강화해서 신경제 건설은 이룩하겠습니다.

▲ 現代